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70
------------	-------

제출년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에 규정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다.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8시 ⇒ 오전 0시 ~ 오전 10시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2일

※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제외 점포의 기준 변경(안 제14조의2제1항)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

마.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제2항 ~ 제4항)

### 3. 조례안 : 따로붙임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동의

구 분	관련 내용
규제명칭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의 제한과 조건부과 ②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근거 및 관계법령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2조의2
규제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형유통기업의 사업 개설 또는 변경을 규제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활동을 일부 제한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규제내용	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②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8시 → 오전 0시 ~ 오전 10시</li><li>-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 매월 2일</li></ul> ③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적용 제외 점포 기준 변경(안 제14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 51% → 55%</li></ul>

##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7. 22. ~ 8. 11 (제출의견 1건)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요약)	조치 내용(검토의견)
주식회사 이마트 공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자율적 합 의에 따른 휴업일 조정 요구</li> <li>○ 영업시간 규제 시작 시간 조정(오전0시 → 오전0시 10분)</li> <li>○ 설, 추석 명절이 의무 휴업일과 겹칠 경우, 휴업일자를 조정하여 자율적 휴무 실시</li> <li>○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피해 발생, 헌법상 기 본권 침해 등</li> </ul>	<p>■ 검토결과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사 항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종전보다 강 화되었기 때문이며, 제출 의견은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에서 논의 할 사항임</li> <li>○ 법률적 침해에 관하여는 조례 개정 시 고려 대 상이 아니고, 상위법이나 헌법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li> </ul>

2)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개정 내용 중 평가지표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개선의견 없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 2013. 8. 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로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 · 변경”을 “지정 · 변경 ·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 · 변경과”를 “지정 · 변경 · 지정취소와”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 · 변경”을 “지정 · 변경 · 지정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 · 변경대상”을 “지정 · 변경 · 지정취소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추진계획에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에서 정하는 것과”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영업시간”을 “영업시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8시”를 “10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 이상 2일 이내”를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준대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이”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을 “구청장은”으로,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을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을 “당사자는”으로, “소집”을 “소집하여”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한 각종 사업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중소유통기업” 이란 유통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 ----- ----- <u>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u> -----.
6. · 7.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u>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u> 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u> ----- ----- . -----.
④ (생 략)  제8조( <u>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u> 의 구성 · 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u>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u>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u> 의 구성 · 운영)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 ----- <u>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u> - -----.

현 행	개 정 안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회재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 &lt;삭 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포구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li> <li>2. 마포구 안의 전통시장 대표</li> <li>3. 마포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li> <li>4. 상공회의소 관계자</li> <li>5.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li> <li>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li>7.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 기업 대표</li> <li>8. 시민단체 관계자</li> <li>9. 주민자치 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li> <li>10. 그 밖에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현 행	개 정 안
<p>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p>	<p>④ &lt;삭 제&gt;</p>
<p>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p>	<p>제9조 &lt;삭 제&gt;</p>
<p>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p>	
<p>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p> <p><u>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u></p> <p><u>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u></p> <p><u>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u></p> <p><u>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u></p> <p>1. <u>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u></p> <p><u>수립에 관한 사항</u></p> <p>2. <u>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u></p> <p><u>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u></p> <p><u>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u></p> <p>3. <u>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u></p> <p><u>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u></p> <p><u>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u></p> <p><u>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u></p> <p><u>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u></p> <p>4. <u>마포구 안의 중소기업이 생</u></p> <p><u>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u></p> <p><u>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u></p> <p>5. <u>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u></p> <p><u>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p>	<p>제10조 &lt;삭 제&gt;</p>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5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간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등 입점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황 발생 시마다 위원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 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 --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 ----- 협의회----- -----.</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p>④ 구청장은 ----- --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 ----- ----- -----.</p>
<p>1. (생략)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생략)</p>	<p>1. (현행과 같음) 2. ----- 지정 · 변경 · 지정취소 ----- 3. ----- 지정 · 변경 · 지정취소와 ----- 4. (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p> <p>· <u>변경 시 고려사항</u>)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u>지정</u> · <u>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u>지정 ·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 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 · 전통적 가치</u></p> <p>2. ~ 4. (생략)</p> <p><u>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u></p> <p><u>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u>대규모점포 등</u>”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u>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p> <p>· <u>변경 ·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u>) ----- ----- <u>지정 · 변경 · 지정취소</u>----- -----.</p> <p>1. <u>지정 · 변경 · 지정취소 대상</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u>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u></p> <p><u>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현 행	개 정 안
<p>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u>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u></p> <p>2. <u>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u></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p>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u>마포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u> 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u>영업시간</u>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u>51퍼센트</u>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 <u>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u> <u>(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 ----- <u>영업시간의</u> ----- ----- . ----- ----- <u>55퍼센트</u> ----- ----- .</u>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u>8시</u> 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1. ----- ----- ----- ----- <u>10시</u> -----.

현 행	개 정 안
<p>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u>1일 이상 2일 이내</u>로 한다.</p>	<p>2. ----- ----- ----- <u>공휴일 중에서</u> <u>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u> <u>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u> <u>아닌 날로 지정 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u></p> <p><u>&lt;신 설&gt;</u></p>	<p><u>② &lt;삭 제&gt;</u></p>
<p><u>&lt;신 설&gt;</u></p>	<p><u>③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④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 <u>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u>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            하여 협의회를 <u>소집</u>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u>당사자는</u> -----  -----  -----  -----  -----  ----- <u>소집하여</u> -----  -----  -----.</p> <p>제17조(시행규칙) ----- <u>시행</u>  <u>에</u> -----  -----.</p>